

제 166 호

행 정 명 령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 및 환경 위협에 맞서는 **뉴욕의 대처를 강화**하고 파리 기후 협약(PARIS CLIMATE AGREEMENT)의 목표를 확인함

2015년 12월 12일에 채택한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규약에 따른 파리 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s Paris Agreement)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에서의 연방정부의 탈퇴는 모든 뉴욕 주민의 환경 및 경제적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리더십의 포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 주민들은 극심한 폭풍 사태, 해수면 상승, 가뭄, 환경 및 경제적 피해 양쪽 모두를 유발하는 정전 등을 포함한 기후 변화의 피해를 직접 목격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Andrew M. Cuomo **본인**이 2050년까지 총 80 퍼센트의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이전에 발령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과 청정 에너지 경제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기회를 인정하여 뉴욕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을 40 퍼센트 줄이고 2030년까지 뉴욕 전력의 50 퍼센트를 재생가능한 전력원으로부터 조달 받으며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을 23 퍼센트 증가 시키겠다는 공약 등을 포함하여 국가를 선도하는 기후 및 청정 에너지 목표를 수립한 뉴욕주 에너지 계획(State Energy Plan)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은 이미 청정 에너지 기준(Clean Energy Standard) 프로그램, 50억 달러 규모의 청정 에너지 기금(Clean Energy Fund), 10억 달러 규모의 NY-Sun 태양광 프로그램(NY-Sun solar program), 미국 최대의 그린 बैं크(Green Bank), 전력망을 보다 복원성이 있고 안정적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기 위한 전례없는 개혁 등을 통해 뉴욕주 에너지 계획(State Energy Plan)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프로그램 등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는 메탄가스 감축 계획(Methane Reduction Plan)의 발령 및 지역 온실 가스 프로그램(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과 교통 및 기후 프로그램(Transportation and Climate Initiative, TCI)을 비롯하여 가스 배출량 감축을 추구하는 지역 협력에의 참여를 포함하여 뉴욕주 경제 전반에 걸친 온실 가스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주의 에너지 계획(New York's State Energy Plan)의 목표와 조치는 미국이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조항들을 이행할 경우 그 협약 내용보다 훨씬 적극적이며 야심에 찬 목표와 조치들이므로 뉴욕이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에서 구체화된 우리나라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확실히 선두 주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온실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청정 에너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선도적인 노력 외에도 주정부는 복원성을 높이고 중요한 서식지 및 자연의 인프라를 보호하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후 스마트 뉴욕(Climate Smart New York)과 같은 진취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투자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는 수백 마일에 걸친 뉴욕의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굴 암초와 살아 숨쉬는 해안선과 같은 천연 자원을 활용하고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며 폭풍 해일과 해수면 상승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금과 허가권을 보장하는 기후 위험 및 복원성 법(Climate Risk and Resiliency Act)을 채택하고 기후 변화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우리 조개류 산업을 포함하여 우리의 대단히 중요한 해양 자원에 미친 해로운 영향을 인정하는 해양 활동 계획 (Ocean Action Plan)을 2016 년에 발간하는 등의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탈퇴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단체, 기업, 시민들과 협력하고 있는 뉴욕과 같은 주들은 파리 협약(Paris Agreement)의 목표를 계속 이행하고 유지하며 심지어 초과 달성하는 것을 필수적인 목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 헌법과 뉴욕주 법률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I. 용어 정의

본 행정명령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 A. “해당 뉴욕주 기관”은 (i) 주지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 및 (ii) 뉴욕뉴저지항만청(Port Authority of New York and New Jersey)를 제외하고 주지사가 회장, 최고 경영자, 이사회의 다수를 임명하는 모든 공사, 공공당국과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II. 온실가스 배출 정책(GREENHOUSE GAS EMISSIONS POLICY)

온실가스 배출량을 경제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2030 년까지 1990 년 수준의 40 퍼센트, 2050 년까지 1990 년 수준의 80 퍼센트까지 감축하는 것이 뉴욕주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해당 뉴욕주 기관의 모든 조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기에서 명시된 정책들 및 2015 뉴욕주 에너지 계획(2015 State Energy Plan)에 명시된 정책과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III.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해당 뉴욕주 기관은 2018 년 3 월 31 일까지 뉴욕주의 이 중요한 정책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조치 및 프로그램들을 시연하는 계획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및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은 이로써 해당 뉴욕주 기관이 채택해야 하는 배출 감축 측정 및 회계에 관한 접근 방식을 개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환경보존부(DEC) 및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YSERDA)은 또한 이로써 해당 뉴욕주 기관이 채택한 계획이 효과적이고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지원을 해당 뉴욕주 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을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당 뉴욕주 기관에는 이로써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책, 재시운전, 자본 에너지 효율성 갱신, 현장에서 재생가능한 고효율 열병합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조치들에 관한 포트폴리오를 구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2017년 6월 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해서 이 명령을
발령함.

주지사

주지사 비서